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07
----------	-------

발의연월일 : 2026. 8. 7.

발 의 자 : 한정애 · 허 영 · 이학영
윤후덕 · 서영석 · 이용선
김의겸 · 조인철 · 이인영
김 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에너지·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금 등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를 활용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을 탄소중립·녹색성장 부문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전환금융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등).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금고의 지정기준”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의 지정 및 변경의 세부기준 및 절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4.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5.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생 략)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u>
	<u>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u>
	<u>2. 주민의 이용 편의</u>
	<u>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u>
	<u>4.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 속가능경영 지표</u>
	<u>5. 녹색금융 · 전환금융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 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u>
<u>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 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 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 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시 · 군 및 자치구의 경</u>	<u>③ 제1항 및 제2항</u> ----- ----- ----- ----- ----- ----- ----- -----

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u>금고의 지정기준</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의 지정 및 변경의 세부기준 및 절차</u>----- -----.
---	---